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 승 수 의원)

의 안 번 호	23-184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.

발의자 : 김승수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백남환, 신종갑, 오옥자, 이한동, 장정희, 차해영, 한선미, 홍지광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입주자등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함(안 제13조 제1항)

3. 관계법령

가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6항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11. 17. ~ 11. 22.

나. 의견제출: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”를 “통보하고,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도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 다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 제2항 각호의 정보는 제외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)	제13조(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)
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.	① ---------- 통보하고,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도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 다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 제2항 각호의 정보는 제외한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제93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 ① 생략

1. ~ 6. 생략

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,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, 관리주체,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·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,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   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“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도 세대별로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”와 관련하여 세대별로 감사 결과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(공공운영비)가 발생함.
2. 비용추계의 전제
   - 의무단지(150세대 이상) 평균세대수 산출 = 의무단지 전체세대수/단지수
   - 우편비용과 관련하여 e-그린우편요금 제작수수료 90원(내용물 1매)와 소형봉투 우편요금으로 430원을 합하여 1세대당 520원 소요됨.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공공운영비	3,815	3,892	3,970	4,049	4,130	19,856
	소계(b)	3,815	3,892	3,970	4,049	4,130	19,856
□ 총 비용(a-b)		-3,815	-3,892	-3,970	-4,049	-4,130	-19,856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없음.
5. 덧붙이는 의견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최정우
연 락 처	02-3153-9306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50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 : 52,415세대
-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수 : 100개소
- 의무단지(150세대 이상) 평균세대수 : 524세대
- 524세대 × 520원(1세대당 우편요금) = 272,480원
- 회계년도당 특별감사 10회 + 정기감사 4회 = 14회 감사 실시
- 272,480 × 14회 = 3,814,720원